

고흥군의회 공고 제2024-49호

「고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4년 12월 2 일

고 흥 군 의 회



고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
-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, 안 제2조)
- 군수의 책무 (안 제3조)
-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 (안 제4조, 안 제5조)
-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 (안 제6조, 안 제7조)

3. 제정조례안: 붙임

4. 조례안 예고기간: 2024. 12. 3. ~ 2024. 12. 9.(7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 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: 061-830-5032, 팩스: 061-830-5595

- 붙임 1. 고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
 2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고흥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국가유공자 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
 -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
 - 다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
 - 라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본인
 - 마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본인
 - 바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
 - 사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
2. “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”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고흥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.

제4조(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고흥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
2. 고흥군이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

② 군수는 「주차장법」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제5조(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)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. 다만,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2.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,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.

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,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.

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 관리 기관 또는 운영 부서에서 부담한다.

제6조(우선주차구역의 이용) 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위반차량 조치)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및 안내표지판 설치기준(제6조 관련)

1. 규격

가. 바닥면 가로 2,300mm × 세로 5,000mm

나. 안내표지판 가로 700mm × 세로 600mm

2. 도안 (국가보훈부 ‘국가유공자 상징’ 심볼 삽입)

가. 바닥면



나. 안내표지판



[붙임 2]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 _____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: _____

○ 전 화 번 호: _____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